



축산폐수정화시설 직접 설계사공 가능

—환경청에서 회신 보내와—

폐기물관리법 시행에 따라 양계업의 경우 1,000m² (약 300평) 이상의 계사시설을 하고자 하는자(기위 소요시설을 갖고 있는자 포함)은 축산폐수정화시설을 계사 100m²당 2m³이상 설치토록 되어있다.

그러나 축산폐수정화시설 설치신고를 하는 과정에서 일부 시군에서 설계자 및 시공자의 자격구비요건 등 제반사항에 대한 법적 해석차이로 문제가 야기되는 사례가 있어 본회에서는 지난 4월29일 환경청에 축산폐수정화시설 설치신고 등에 대한 질의를 하였다.

본회 질의사항과 환경청 회신은 다음과 같다.

○질의

가. 축산폐수시설 설치신고서에 설계도서를 첨부 신고토록 된바 이 경우 축산폐수정화 시설의 설계도서는 환경청장이 정하는 표준설계도서에 따른 자가 설계도서를 포함 한다고 되어 있으므로 환경청의 축

산폐수 정화시설에 대한 표준설계도서 및 해설집을 참고하여 축산업자가 직접설계 또는 건축설계사에게 의뢰하여 작성한 설계도서를 첨부 신고하여도 무방한 것으로 생각하고 신고를 이행하고 있으나, 일부 관할 행정기관에서는 이는 어디까지나 폐수 정화시설이므로 환경보존법 제 47조 규정에 의거 환경청에 등록된 배출시설업체에서 작성한 설계도서를 첨부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바 이에 대한 귀견여하.

나. 축산폐수 정화시설(닭의 경우 환경청 고시 88-21호에 의한 매립화 처분방법 또는 퇴비화 방법의 건조시설)을 할시 일부 행정기관에서는 시공도 환경청에 등록된 업체가 시공하여야만 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어느 누구나 시공하여도 (건축법 범위내에서의 직영공사 또는 건축업 면허업체에 위탁공사) 무방할 것으로 생각하는바 귀견여하.

다. 닭의 경우 자가설계도서 작성시 환경청 표준설계도서와 꼭같지 않아도 구조 및 규격이 표준설계도서에 크게 벗어나지 않는 범위내에서 계분을 건조보관하는데 지장이 없는 내구성 건물(기계화 시설에 의한 계분 건조시설 포함)로 하면 된다고 생각하는바 귀견여하.

라. 자가 설계도서 작성을 하기 어려운 농가에서는 환경청 표준 설계도서를 그대로 복사 활용 하여도 무방할 것으로 생각하는바 귀견여하.

마. 폐기물 관리법 시행 이전에 1,000m² 이상의 사육시설(계사)를 설치하고 환경청 고시 88-21호 기준에 해당하는 계분 건조 보관시설(계분창고)를 기위 설치활용하고 있는 농장(양계장)에서도 폐기물 관리법 시행규칙 제 28조 및 제 29조에 의한 신고 및 준공 절차를 밟아야 하는지 여부.

○회신

가. 질의 “가” “나”에 대하여 :

축산폐수 정화시설의 설계, 시공은 폐기물 관리법 시행규칙 제 36조의 규정에 의한 일반 폐기물 처리시

설 설계 시공업(축산폐수정화시설)등록을 받은 업자에게 의뢰하여 설계 시공을 하거나, 설치하고자 하는 자가 직접 설계 시공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표준설계도를 참고 할 수 있음.

나. 질의 “다” “라”에 대하여 :

환경청이 작성 배포한 표준설계도는 정화시설 설치에 대한 국가의 표준도면이므로 누구나 참고로 할 수 있음. 다만 폐기물 관리법 시행규칙 제 30조의 설치기준(환경청 고시제 88-21호 포함)에 적합한 구조물로 설치하여야 할 것임.

다. 질의 “마”에 대하여 :

폐기물 관리법 시행이전에 기설치된 축산시설도 동법 시행규칙 제 28조 및 29조에 의한 신고 및 준공 절차를 밟아야함.

축산법시행령중 개정령(안)에 대한 의견 제출

본회는 축산법시행령중 개정령(안)에 대하여 본회 의견을 농림수산부에 다음과 같이 제출했다.

○축산법 시행령중 개정령안 제 6조의 2 제3항 규정의 심의위원 구성원중 정부 관련기관 위원이 너무 많아(위원장, 부위원장 포함 6명) 자칫 동위원회가 전근대적인 관료적 사고방식으로 운영된다는 오해를 살 우려가 있으며 동위원회에서는 축산업자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야 할 것이므로 동령 제 6조의 3 위원회의 기능과 특별한 관련이 없는 부서(재무부 이재국장, 상공부 산업정책국장)를 심의위원회에서 제외시키고 생산자 대표를 심의위원으로 증가시켜 주기 바람.

○축산법 시행령중 개정령안 제6조의 2 제3항 제7호에 축산농가, 축산관련단체 및 조합의 장과 축산업에 대한 학식이 풍부한자 중에서 농림수산부 장관이 위촉하는 자가 심의위원이 되도록 되어 있으나 우리나라 축산업의 주종을 이루고 있는 생산자 단체인 사단법인 대한양계협회, 사단법인 대한양돈협회,

사단법인 한국낙농육우협회의 장은 농림수산부 장관이 위촉하는 심의위원이 아닌 법률상의 당연직 심의 위원으로 규정하여 주시기 바람.

○축산법 시행령중 개정령안 제6조의 2 제3항 제7호에 의거 농림수산부 장관이 심의위원을 위촉할시 학자에 편중되어 위촉할 우려가 크며, 이 경우 현실 감각을 잃고 이론에 치우친 결정으로 시행에 많은 문제점이 야기될 우려가 있으니 축산농가의 의견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는 민주적 심의위원회가 되게 하기 위하여 당연직 위원을 제외한 나머지 위원에 대하여는 다음과 같은 비율에 의거 위촉하도록 규정하여 주시기 바람.

• 축산농가위원 : 50%

※축산농가 위원은 각업종별(소, 돼지, 닭 등)로 세부업종별 농가대표(예시 양계의 경우 육계농가대표, 채란계농가대표, 부화종계대표)를 고루 위촉

• 기타위원(축산관련 단체장, 조합장, 축산업에 대한 학식이 풍부한자) : 50%

축산법 개정에 따른 의견 제출

본회는 89년 제2차 이사회에서 결의된 축산법 개정에 따른 본회 의견을 다음과 같이 농림수산부에 제출하였다.

가. 축산업 참여 금지대상 대기업 기준(법 제13조 2의 제2항 관련) :

중소기업법 제2조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자의 범위(중소기업법 제2조 별표 및 동시행령 별표 1과 별표 2)를 초과하여 중소기업이 아닌 기업자를 축산업 참여금지 대상으로 규정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됨.

나. 양계업의 등록규모 조정여부 및 허가제 실시여부와 규모 및 허가 상한선 규모 설정 여부 :

양계업의 허가제 실시 등 각종 규제를 실시하므로 생산조절에는 약간 도움이 될지 모르나 양계산업발전을 위해서나, 수입개방을 대비하여 국제경쟁력 향상을 위해서는 문제점이 있으므로 본회에서는 허가

제 실시의 필요성 여부를 더 연구 검토하여 필요하면 89년말 이후에 본회 의견을 건의코자 하오니 우선은 현행대로 등록제안만을 실시하여 주기 바람.

천호·이천채란분회 가입 승인 —제2차 이사회에서 가결—

지난 5월 1일 개최된 89년도 제 2차 이사회에서 천호분회(분회장 심준식)와 이천채란분회(분회장 오무남)의 가입신청에 분회가입 승인으로 양계협회 조직을 확대하게 되었다.

○천호분회

• 주소 : 서울 강동구 천호동 355

• 전화번호 : (02)478-3605

• 회원명단 :

곽노익(이천군 백사면)

김인영(용인군 수지면)

김종수(광주군 실촌면)

김교석(이천군 장호원읍)

김영환(홍성군 광천읍)

민덕기(화성군 태안면)

신근호(아산군 신창면)

심준식(광주군 중부면)

엄홍용(광주군 동부읍)

윤경중(광주군 동부읍)

이무현(강동구 천호동)

이의선(강동구 명일동)

오근성(광주군 실촌면)

이점규(이천군 장호원읍)

이두형(음성군 삼성면)

조대현(음성군 대소면)

최상천(파주군 금촌읍)

최정삼(광주군 초월면)

최정규(시흥군 수암면)

황석규(안성군 서운면)

○이천채란분회

• 주소 : 이천군 이천읍 중 2리 166-2

• 전화번호 : (033)34-0285

• 회원명단 :

전병훈(여주군 흥천면)

공호식(이천군 이천읍)

정광면(이천군 부발읍)

김교석(이천군 장호원읍)

정혜인(이천군 모가면)

오무남(이천군 이천읍)

박경화(이천군 오가면)

고인섭(이천군 장호원읍)

김두경(이천군 부발읍)

김주홍(여주군 가남면)

안태주(이천군 신둔면)

윤근수(이천군 부발읍)

김성오(이천군 신둔면)

이명구(이천군 부발읍)

이천석(여주군 능서면)

오무홍(이천군 신둔면)

이래용(이천군 모가면)

임정성(이천군 부발읍)

정의준(이천군 부발읍)

김의겸(이천군 대월면)

홍석수(이천군 부발읍)

이덕선(이천군 신둔면)

한명복(이천군 백사면)

곽정근(이천군 이천읍)

용인분회 전화번호 변경

용인분회(분회장 최종필) 전화번호가 지난 5월 16일부터 변경되었다.

• 변경전 : (033)8-5232

• 변경후 : (033)281-1232

• 주소 : 용인군 수지면 풍덕천리 85-8

제5회 전국닭고기요리솜씨대회 지방대회

-대전·대구·전주에서-

본회는 대중적이며 다양한 닭고기요리를 개발·보급하고 지방에서의 닭고기 소비를 촉진하고 10월 중에 실시되는 제5회 전국닭고기 요리솜씨대회에 지방인의 참여를 적극적으로 유도하기 위해 금년부터 지방대회를 실시하기로 했다.

행사내용은 다음과 같다.

○주최 : 사단법인 대한양계협회

○주관 : 사단법인 한국식생활개발연구회

○개최일 : 충청대회 : 6월 13일(화) 13:00

영남대회 : 6월 30일(금) 13:00

호남대회 : 7월 5일(수) 13:00

○장소 : 충청대회 : 대전시 문화원 2층, 영남대회

: 대구 파크호텔, 호남대회 : 전주시 여성회관

○참가대상(자격)

충청대회 : 대전시 및 충남·북도 거주자

영남대회 : 부산, 대구시 및 경남·북도 거주자

호남대회 : 광주시 및 전남·북도 거주자

○실시방법

- 참가자 신청서 접수

소정의 참가신청서를 본회 도지부, 지역별 공동주최측 또는 한국식생활개발연구회에서 지역별로 접수한다.

- 참가자 서류심사

접수된 신청서(요리법 원고)를 사전에 심사위원들이 선정하여 지방 솜씨대회 당일에 참석하도록 개별통보한다.

- 참가요령

서류 합격자는 행사당일에 미리 제출된 원고대로 닭고기 요리실물(완성품)을 출품한다.

- 시상내용

가. 최우수상 : 1명(상장과 30만원 상당의 부상)

나. 우수상 : 1명(상장과 10만원 상당의 부상)

다. 장려상 3명(상장과 5만원 상당의 부상)

라. 참가상 : 참가자 전원(소정의 기념품 증정)

• 요리강습회

참가자들의 출품요리를 심사하는 동안 닭고기 요리 강습을 실시한다.

제1회 부산경남지부 친선배구대회 개최



본회 부산 경남지부는 지난 5월 11일 경남 김해시 문화체육관에서 부산경남지부 회원들과 관련업계 등 8개팀이 참가하여 제 1 회 부산경남지역 체육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배구대회에서는 고려산업팀이 우승하였고, 육계분과 서부팀이 준우승, 진흥사료팀이 장려상을 차지했다.

협회가입을 축하합니다

강정구(육계, 화성군 향남면)

정병문(육계, 김포군 양촌면)

최태균(육계, 제천시 장락동)

오명도(육계, 강남구 신사동)

이은태(육계·부화, 충주시 호암동)

곽인신(종계, 안성군 미양면)

김선태(부화, 공주군 신풍면)

류창우(종계, 아산군 배방면)

유흥복(채란, 파주군 천현면)

최용로(채란, 홍성군 홍북면)

제4회 임직원 수련대회 및 단합대회 개최

—6월 9,10일 경주 도투락월드에서 회장단 주최로—

도지부 및 분회를 포함한 본회 임직원과 대의원 상호간의 유대를 더욱 공고히 하여 협회 및 양계산업 발전에 기여하고, 전양계인이 본회를 중심으로 단합하고 화합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으로 협회조직을 확대하기 위해 해마다 실시하고 있는 임직원수련 및 단합대회가 오는 6월 9일과 10일 양일간 경주 보문단지내 도투락월드에서 개최된다.

4회째 개최되고 있는 임직원 수련대회 및 단합대회는 회장단 및 지부·분회장과 대의원, 직원 등 양계관련인들이 참가하여 상호교류와 만찬회, 오락회, 등산대회 등을 갖게 된다.

계열화사업 현지시찰 예정

—6월 7일~8일간—

본회는 양계산업의 발전과 국내경쟁력 향상을 위해 계열화사업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이를 적극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일각에서 계열업체가 전체 양계업 시장을 흐리게 하고 있다는 비판적인 여론과 계약상의 문제가 있다는 불만이 제기된 바있다.

이에따라 본회에서는 육계분과위원 및 관계기관, 언론매체 등 10여명의 시찰단을 구성하여 5월 7일과 8일 양일간 현지를 둘러본 후 토론회를 거쳐 향후 계열화 산업의 올바른 방향을 정립 지도 계몽할 계획이다.

한국열풍가상사와 미래를 같이 할 개척자를 찾습니다.

축산기기 경력사원

1. 모집인원 : ○○명
2. 응모자격 : 축산에 종사한 지 2년 이상 되는 자로서 운전면허 소지자
3. 전형방법 : 서류전형 및 면접
4. 제출서류 : 자필이력서(명함판사진 부착 및 전화번호 명기)
5. 접수기간 : 6월 12일(월) ~ 6월 26일(월)
6. 접수처 : 서울·강남구 일원동 639 파워트론 건물내
전화 : (02) 577-3747 ~ 9

